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7차기획재정위원회
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정부제출(의안번호 제3464호)

2024. 11.

기 획 재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이정은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2
1.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(정부안)	2

I. 개요

1. 정부안(의안번호 제3464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정부
- (2) 제 안 일 : 2024. 8. 30.
- (3) 회 부 일 : 2024. 9. 2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,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.

II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(정부안)

현 행	개 정 안
☐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(제6조제4항) ☐ 제출 가능 금융위원회의 조사 자료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 - <신 설>	☐ 금융거래 과세자료 범위 추가 ☐ 제출 가능 금융위원회의 조사 자료 - (현행과 같음)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의무 위반

* 정부안 2024. 8. 30. 제출(의안번호 3464)

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조사 자료의 범위에 ‘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사 자료’를 포함시켜 세원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.

☐ 현행법은 근거과세(根據課稅)와 공평과세(公平課稅)를 실현하기 위해 과세자료의 제출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과세자료 중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1)에 따라 자료의 제공이 엄

1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금융거래의 비밀보장)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(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)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(이하 “거래정보등”이라 한다)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1항 각 호[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(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(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]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

격히 제한되고 있어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.

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현행법 제6조제4항²⁾에서는 금융위원회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자본시장법」”이라 함)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시정명령 등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(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)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「자본시장법」 제147조(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)³⁾에서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된 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를 위반한 건에

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)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) ④ 금융위원회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)를 한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(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)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3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
제147조(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)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(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을 대량보유(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)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 이내에 그 보유상황, 보유 목적(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),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,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(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(임원의 선임·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,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사 자료는 현행법상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범위4)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.

□ 개정안은 이와 같은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사 자료를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,

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한 조사 자료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해당 여부,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차명거래 진위 파악 등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이므로, 관련 정보의 공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조세탈루 여부를 파악하고 실질에 따른 공평과세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.

문 의 처
02)6788-5161

4) 제출대상은 「자본시장법」 제4편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결과인데, 주식등 대량보유 보고 규정은 「자본시장법」 제3편(증권의 발행 및 유통)에 규정되어 있음.